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장규권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4월 25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 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신설).
- 2)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6호).
- 3)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신설).

○ 공중화장실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함

나)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6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설치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을 규정함

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 법 제8조제3항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적용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쾌적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